

의안번호	제 567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 헌 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7
----------	-----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3일

발 의 자 : 임헌경, 정영수, 이종욱,
이숙애, 윤홍창, 최광옥,
연철흙

1. 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적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완료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학교안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 19. ~ 2017. 2. 8.(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및 위생 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기구 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

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및 위생 등에 관한 점검, 유지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사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학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직원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기구가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

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보고·검사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기구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기구·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설치검사 등) ①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어린이놀이기구 위생점검

2.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항목으로 위생점검인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검토되나, 바닥재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란, 폼알데하이드 등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 안전점검 및 보건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서 정하는 위생점검이 전문검사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수수료 적용 단순 추계 산정함[참고 1, 2]
 - * 2017. 1. 1.부터 어린이놀이기구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 토양(4호) 및 합성수지재질 바닥재(5호)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란, 폼알데하이드
- 어린이놀이기구는 총598개소, 그 중 모래바닥재가 설치된 479개소와 고무바닥재(포설도포, 기타) 197개소의 규모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 산출 함
 - * 2017. 1. 1.기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

나. 추계 결과: 금176,121천원

- 상세내역

(단위: 천원)

바닥재 유형	산출내역	추계비용	비고
모래바닥재	260,300원×479개소	124,684	
고무바닥재 등	261,100원×197개소	51,437	
합 계		176,121	

다. 재원조달방안: 연 1회 전문기관 위생점검 의뢰 시 약 26만원정도
소요, 소액으로 관리주체 시설유지관리비 등
으로 부담